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42
----------	-------

발의연월일 : 2025. 4. 30.

발의자 : 신영대 · 임오경 · 안호영

홍기원 · 황희 · 이학영

박수현 · 추미애 · 박지원

김용만 · 권칠승 · 박희승

정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2025년”을 “203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203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p> <p>① (생 략)</p> <p>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u>2025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u>2025년</u>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p>	<p>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u>2035년</u></p> <p>-----.</p> <p>③ -----</p> <p>-----</p> <p>-----</p> <p>-----</p> <p>-----</p> <p>-----<u>2035년</u>-----</p> <p>-----.</p>